■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[별지 제6호서식] <개정 2020. 9. 29.>

사업개시신고서

※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기간 14일

신고인	대표자 성명	생년월일
	주소	
	상호	전화번호
	소재지	

신고 내용	사업개시 연월일
	최초 전력거래일(발전사업자의 경우)
	사업내용

「전기사업법」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개시를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 (서명 또는 인)

산업통상자원부장관
시・도지사 귀하

첨부서류	1. 사업개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(발전사업자의 경우에는 최초로 전력거래를 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합니다) 2. 「산지관리법」 제39조제2항에 따른 중간복구명령(이에 따른 복구준공검사를 포함합니다)의 이행을 전력거래 전에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(「산지관리법」 제39조제2항에 따른 중간복구명령을 받은 발전사업자만 해당합니다)	수수료 없음

처리절차

신고서 작성 및 제출	➔	접 수	➔	신고 수리
신고인		산업통상자원부 시・도		산업통상자원부 시・도

※ 작성방법: 「전기사업법」 제9조제3항에 따라 전기사업별 또는 전기설비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(전기사업별 또는 전기설비별로 구분하여 준비기간을 지정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)

210㎜×297㎜(백상지 80g/㎡)